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82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8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5
1.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안 제14조의2 등)	5
1) 임시허가 제도 도입	23
2) 신속처리 절차 도입	26
3)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금 지급	29
4) 벌칙 및 과태료	32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82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6. 4. 21.

3. 회 부 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와의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제도 도입 및 절차 마련(안 제2조제9호, 제14조제5항 및 제14조의2 신설)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함.

나.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제6항, 제14조의2제6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시허가 취소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1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는 경우와 부가조건 및 심사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이 정비되었으나 지체 없이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시허가 심의·의결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1항)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마.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2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및 임시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바.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임시허가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마련 (안 제27조, 제29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부가조건 미준수, 책임보험 미가입, 임시허가 부여
가 취소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Ⅲ. 검토의견

1.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안 제14조의2 등)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중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임시허가”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

현행	개정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 기준을 실증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4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 및 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 제5항 및 제6항 제2호----- ----- ----- -----. ⑧ ----- 제7항----- ----- ----- ----- -----. ⑨ ----- ----- 모빌리티혁신위원회(제6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가-----.

현행	개정안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생략) ⑤ ~ ⑦ (생략)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	----- ----- ----. ② ----- 제12조제7항-----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8항-----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제12조제9항-----

현행	개정안
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⑤ 제1항 및 제1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 ⑦ (생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 · 기반시설 · 서비스 및 기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모빌리티 수단 · 기반시설 · 서비스 및 기술에 제14조의2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 제12조제9항----- ----- ----- ----- -----.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 ----- ----- 제8항 ----- ----- ⑩ ----- 제9항----- ----- ----- ----- 제14조의2(임시허가) ① 새로운 모빌리

현행	개정안
	<u>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u> <u>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u> <u>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u> <u>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u>

현행	개정안
	<u>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u>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u>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u>1. 사업실시계획서</u> <u>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u> <u>3. 임시허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u> <u>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u> <u>5. 그 밖에 임시허가 부여에 필요한 사항</u>

현행	개정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4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 및 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현행	개정안
	<u>한다.</u> ⑨ <u>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u> ⑩ <u>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⑪ <u>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⑫ <u>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u>

현행	개정안
	<u>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그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u> <u>⑭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u> <u>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임시허가의</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 <u>⑩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4조의3(임시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u> <u>2. 제14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u> <u>3. 제14조의2제15항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1. <u>실증특례</u> 의 부여에 관한 사항	1. <u>실증특례</u> 및 <u>임시허가</u> -----
2. <u>실증특례</u> 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u>실증특례</u> 및 <u>임시허가</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위임하는

현행	개정안
⑤ 그 밖에 <u>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u>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u>업무의 검토·조정·처리</u> 4. 그 밖에 <u>모빌리티혁신위원회</u>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 <u>모빌리티혁신위원회</u> 및 <u>전문위원회</u>----- 제24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등이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4조의3(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현행	개정안
<u>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u>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9조(과태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2. 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자는 제외한다) 3. (생략) <신 설> 4. (생략) ② (생략)	<u>해당하는 자</u>-----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에 따른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 제29조(과태료) ① ----- ----- ----- ----- 1.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 ----- ----- 2. 제12조제10항 또는 제14조의2제11항 ----- -----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 및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임.

2017년 12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확정 후,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ICT),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이후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19.4월), 스마트도시('20.2월), 연구개발특구('20.12월), 모빌리티('23.10월), 순환경제('24.1월) 분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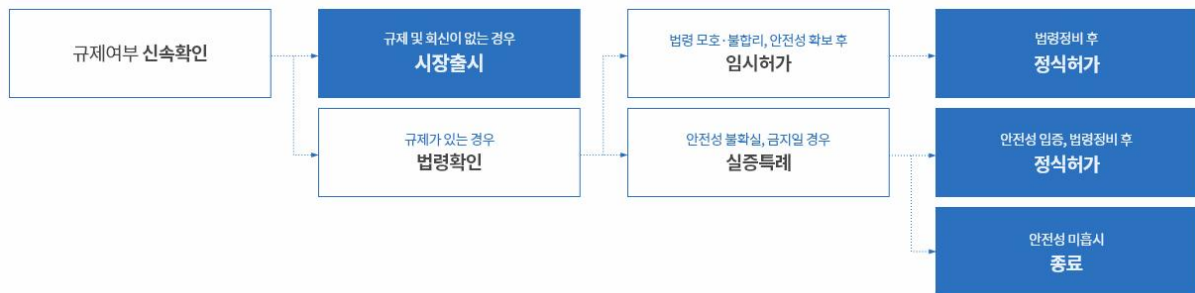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의 신속확인(이하 “신속확인”이라 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함), 임시허가로 구성되어 있음.

신속확인 은 특정 사업에 대한 규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이고, 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며,

임시허가는 신기술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임.

< 규제 샌드박스 구성 및 절차 >



자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https://sandbox.korcham.net>)

현행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규제 샌드박스 유형 중 신속확인과 실증특례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허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신속확인 은 현행 제11조1)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

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 확인(규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타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 등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속한 규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실증특례는 현행 제12조2)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8조에 따른

스 및 기술에 적합한 허가 기준이 없거나 기존 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1회 연장 가능)의 유효기간 내에서 실증특례가 부여되고,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기간·규모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그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임시허가 제도 도입

앞에서 서술했듯이, 현행법에는 신속확인과 실증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임시허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현행법 제정(2023.4.18.) 당시 모빌리티 분야가 차량·도로·교통시설 등 교통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등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기술과 서비스 안전성 검증 등의 실증특례 확보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함.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비교하면,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 및 사업성을 실제 환경에서 제한된 조건하에 시험·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임시허가는 기술·서비스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경우 법령 마련 이전까지 일정 기간 시장에 출시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비교 >

구분	실증특례	임시허가
목적	안전성·효과성·사업성의 시험·검증	법령 정비 전 시장 출시 허용
전제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음	안전성이 이미 검증됨
범위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제한 없이 시장 출시
후속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여부 검토	법령 정비가 예정된 상태
법령정비	사업자 요청 시 검토	관계기관의 정비 의무 발생

자료 : 국토교통부

현행법에 임시허가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먼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인 2년(1회 연장 가능)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사항임에도 실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등 타 규제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신기술·서비스라 하더라도 신청 분야(소관 부처)에 따라 사업화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음³⁾.

< 다른 법률에서 임시허가 근거조항 >

법률	임시허가 규정 유무	근거조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7조
산업융합촉진법	○	제10조의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33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6조의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90조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로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병원 동행서비스 등의 사업은 산업융합·ICT융합 규제샌드박스과 과제가 중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가능한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인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타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ICT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실증특례 210건, 임시허가 63건으로 나타났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실증특례 839건, 임시허가 63건으로 나타나, 다른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과제 현황('19년~'26년) >

구분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실증특례	210	839
임시허가	63	63

자료 : 국토교통부

따라서 현행법에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증→임시허가→본허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사업화 경로가 구축되어,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임시허가는 실증특례와 달리 제한된 구역·규모 내에서의 실험이 아닌 실질적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심의 과정에서의 엄격한 심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한편, 현행 제14조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모두가 법령 정비에 착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안 제14조제5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만을 임시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신속처리 절차 도입

개정안 제12조제6항 및 제14조의2제6항은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현행 제12조는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30일 이내의 회신),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상정·심의 등의 절차를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기존에 유사·동일한 내용의 실증특례 사례가 있더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에서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로, 유사·동일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순차적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반면, 신속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처리현황⁴⁾(2019~2026년)을 살펴보면, 신규과제는 89건이 처리되는데 평균 185일이 소요된 반면, 유사·동일과제는 211건이 처리되는데 평균 83일이 소요되어, 유사·동일 과제에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할 경우 처리 기간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유사·동일과제 처리현황 >

과제 구분	신규 과제(A)	유사·동일과제(B)
과제수(건)	89	211
평균 처리일수 ⁵⁾	185	83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2019년~2026년 5월,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이를 고려할 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서 유사·동일 과제에 대해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신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업자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에 신속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5) 처리일수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위원회 승인일까지 소요일수를 말함.

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안전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나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고, 특히 유사·동일한 안전의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소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전문위원회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신속 처리 절차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비교 >

구분	본위원회	사전검토 기구	동일·유사과제 처리 기구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상정 전 필수 심의)	전문위원회('25.12.2. 개정)
모빌리티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실무위원회	(부재)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정부는 2025년 4월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⁶⁾을 심의·의결하여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⁷⁾

6)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함.

7)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은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임.

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며, 규제 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한 바 있음.

유사 입법례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3)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급 지급

현행법은 신속확인, 실증특례의 규제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하도

록 유도하는 면책 근거나 포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국가공무원법」⁸⁾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⁹⁾ 등에 따라 일반적인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신기술·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담당 공무원은 실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부담은 물론, 신청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나 배임에 대한 감사 등의 우려가 높음.

8)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
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9)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
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위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산업 발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 분야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융합 촉진법」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포상을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실시계획서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임시허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부정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임시허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¹⁰⁾¹¹⁾).

나. 국토교통부 의견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해소하고, 유연한 신사업 실증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시허가 도입에 동의함.

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0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11) 「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

2.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종료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운행한 자

5.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착수 지원을 위해 유사 과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속한 처리 절차와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함.

실증업무 특성상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영역이 잦아 실무자들의 부담이 크므로 적극적인 행정 독려를 위한 면책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75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①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 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6(임시허가) ①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역특구법』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정보통신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규정 내용이 동일한 구조, 다만, 개정(안)과 정보통신융합법은 최초 유효기간을 2년,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은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